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8/ 6 통권 173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담론 (3)
-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에 납의무 있음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수산물을 소비 가능한 상태로 조리하여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변형없는 미가공 식료품만 면세됨 (p.13)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부가세 일반과세·영세율과 면세간 비교>

| 구분        | 일반과세          | 영세율               | 면세               |
|-----------|---------------|-------------------|------------------|
| 목적        | 소비지과세         | 소비지국과세원칙          | 최종소비자 부담완화       |
| 대상        | 일반재화용역        | 해외수출, 외화획득거래      | 기초생활필수품 등        |
| 대표상품      | 공산품           | 수출품               | 농산물              |
| 면제정도      | 완전과세          | 완전면세              | 부분면세             |
| 구입자부담가    | 110           | 100               | 105              |
| 사업자등록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
| 사업자의 신고의무 | 자진신고납부        | 일반대로 자진신고 (매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
| 매출세액      | 10%           | 매출세액 없음           | 매출세액 없음          |
| 매입세액      | 10%           | 매입세액환급 (조기환급)     | 매입세액불공제 (비용반영)   |
| 매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면세계산서 발행         |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진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39호 / 주간 32호

2025. 8. 6.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 일반과세·영세율과 면세간 비교  | 표지          |
| CEO의 경영산책                 |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담론(3)  | 2           |
| 세무·회계상담자문<br>(남들은무슨고민할까?) | - 에너지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br>- 자산대체 5년 후 자산관련 비용 회계처리 질의<br>- 중식비 소급 지급시 비과세 가능 여부<br>- IPP 연계 인턴 사원 실습비 지급 계정 문의  | 5<br>6<br>6 |
| 눈에 맞는 절세미인                | 12월말 결산법인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있음   | 7           |
| 매일 절세재무요점                 |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br>- 중부세 강화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대응행태   | 9<br>10     |
| 직장인Survival               |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5가지 현실적인 방법  | 11          |
| 최신 판례예규<br>(이런저런 유권해석)    | - 미가공식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감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가공식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353, 2024.06.20)<br>-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735, 2024.11.14) | 12<br>13    |
| 세정뉴스와 해설                  | 부자감세 지우는 이정부...<br>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 14          |
| 마케팅<br>Tax consulting     | 수산물을 소비 가능한 상태로 조리하여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변형없는 미가공식품만 면세됨   | 12          |
| 세무정보                      |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br>-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 15<br>39    |
| 세무환율정보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6           |

#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담론(3)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 배경

신정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주주 가치제고, 디지털 혁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OECD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 확보, 경영-소액주주간의 균형, 연성규범(soft-law)과의 균형, 실행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경영에 대응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G20/OECD기업지배구조의 거시적 평가 접근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따르는 기준이나 원칙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일정한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자율규제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스투어드십 코드 등이 예이다. 최근 자본시장과 회사법 분야에서 연성규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 ● G20/OECD 기업지배구조의 종합적 접근

국가내에서 기업지배원칙이 구현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다. 원칙 및 하위 원칙에 따라 법적 요구 사항, 연성법(soft law)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 권고사항, 기타 기업지배구조 지침, 기업공시, 감독 당국 및 자율규제기관(SRO)이 수집한 보고 및 데이터, 그리고 이행 여부에 대한 증거를 포함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원칙 이행을 평가할 때, 원칙의 일부 측면은 법과 규정에 명시될 것이지만,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다른 요소들도 지침, 자율 규제, 지침 및 기타 문서와 같은 특정 관행의 채택을 장려할 수 있으며, 주주참여, 의결권자문 가이드라인(proxy advisory guidance)\*, 또는 주식 거래를 통해 행사될 수 있는 무형의 시장 압력도 포함될 수 있다. 의무적인 회사법 시스템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 계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토자의 업무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연성법의 권고사항(soft law code recommendations), 업계 지침 또는 기타 시장 압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권장되는 원칙이나 시장 관행에 관한 정보가 해당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원칙을 구현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의결권 자문사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예 : 이사 선임, 합병 등)에 대해 기관투자자나 주주에게 투표 권고(의결권 행사지침)와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복잡한 주총 안건을 적확히 판단하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문사는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갖춘 분석과 권고를 제공해야 한다.

●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집행기제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mechanisms)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견고한 집행 환경 없이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집행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검토자는 공적 집행시스템과 사적 집행시스템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표 1). 국가는 두 요소를 혼합하여 적용하며 각 요소에 부여되는 상대적 가중치가 다르다. 따라서 시스템의 공정하고 전체적인 그림, 즉 시스템의 효과성과 견고성을 위해서는 두 접근 방식의 기능이 모두 이해되어야 한다. 집행이란 증권 규제 기관, 검찰, 한국거래소 등 국가 및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 과 같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회사법, 증권법, 상장 및 공시 규정,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집행은 법원의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뿐만 아니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이는 신속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자율규제기관은 정부가 아닌 시장참여자(예 : 증권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회원사나 소속 시장참여자를 규율과 감시를 수행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 소송 등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중재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표 1 공적 및 사적 집행기제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mechanisms)

|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 |       | 사적 집행시스템(Private enforcement mechanism) |       |
|---------------------------|-------|---|-------|
| Mechanism                 | Actor | Mechanism                               | Actor |
|                           |       |   |       |

|  |                                 |                              |                                       |
|--|---------------------------------|------------------------------|---------------------------------------|
| 시장 규칙 및 상장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br>회사 지배구조를 다루는 기타 조치(예: 주총의<br>유효성에 대한 판결 발표, 발행사에 시정 조치<br>명령, 경고 발령 등)에 대한 제재 | 증권규제당국<br>검찰<br>증권거래소<br>자율규제조직 | 민사 소송<br>(주주 대표소송,<br>집단 소송) | 사법부와 법원                               |
|  |                                 | 대안적<br>분쟁해결제도                | 중재, 조정 등<br>(한국거래소,<br>금감원<br>분쟁조정기구) |

대부분의 원칙과 하위 원칙에 대한 필수 기준 평가는 일반적으로 집행의 효과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있어 시장 힘의 강도와 효과성(strength and effectiveness of market force)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의 힘은 법적/규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시장 친화적일 수 있는 법적/규제적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상당히 상이하다. 예를 들어, 기업 지배구조의 공시에 대해 이를 검증하고 이에 기초한 주가가 형성되는 (효율적) 자본시장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시장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효과적인 주주 권리는 기업이 정책과 내규를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기업 지배구조 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 집중과 미성숙한 자본시장 환경에서는 시장 힘에 의존하는 것이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자본시장 규제 기관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및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다른 집행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안 추진에 함의: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와 정책적 대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나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적 요구와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OECD기업지배구조위원회(OECD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정책적 대화와 국제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유용할 것이다. OECD는 2년마다 발행하는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Factbook")은 OECD, G20 및 FSB 국가의 공통적인 실무관행(common practice)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ROSC(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의 후속 조치에 기술 지원과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호에서 검토 연재할 예정이다.

\* 세계은행의 ROSC는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기준과 규범(standards and codes)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의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 점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에너지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Q** 당사가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노후 컴프레샤를 에너지 절감 설비로 교체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투자비는 4년(48개월)에 걸쳐 원금과 관리비(이자)를 포함한 월 상환액이 나가게 되며 시설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는 당사가,  
 그리고 법적 소유권은 에너지효율화사업자가 가지다가 상환기간이 종료한 후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당사로 이전되는 계약입니다.

질문인 즉,

1. 월 상환액에 관한 처리방법
2. 4년 경과 후 소유권 이전시 해당설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예:감정평가 등)

**A** 1. 일종의 운용리스계약이라고 판단되므로, 월 상환액은 비용(지급임차료, 리스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권이전시에는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되며, 시가가 불명확하면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자산대체 5년 후 자산관련 비용 회계처리 질의

**Q** 본원 a건물은 건설 공사가 2018년에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시작한 2018년에 자산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감가상각 중 입니다.  
 2024년에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외부 업체에 사용승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질의) 자산인식을 2018년에 하고 해당연도부터 건물을 사용중인데, 2024년에 사용승인 용역비를 a건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 만약 2018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자본적지출이 아닌 사용승인용역비를 추가로 취득가액에 합산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금액은 임직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국세청유권해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 중식비 소급 지급시 비과세 가능 여부

**Q** 중식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7월에 1~6월분의 중식비 인상금액 10만원\*6개월 = 60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면 해당 금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식대 비과세항목은 매월별금액 기준이므로, 나중 한꺼번에 지급한 것을 일괄 소급적용함은 안되며, 소급 적용하려면 상반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 IPP 연계 인턴 사원 실습비 지급 계정 문의

**Q** IPP 연계로 고용한 인턴 사원에게 실습지원금을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교로부터 실습지원금 금액을 payback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습비를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급여 계정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실습지원금의 최종 부담자는 귀사가 아니고 학교이므로 선지급시 귀사의 비용(급여)로 처리하면 안되며, 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payback 시점에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통 화 명 |   |   |       | 7월 25일<br>(금) | 7월 28일<br>(월) | 7월 29일<br>(화) | 7월 30일<br>(수) |         |         |        |        |        |
|-------|---|---|-------|---------------|---------------|---------------|---------------|---------|---------|--------|--------|--------|
| 미     | 달 | 러 | (USD) | 1368.70       | 1376.00       | 1379.60       | 1397.40       |         |         |        |        |        |
| 일     | 본 | 엔 | (JPY) | 930.96        | 931.21        | 928.96        | 936.88        |         |         |        |        |        |
| 영     | 국 | 파 | 운     | 드             | (GBP)         | 1848.91       | 1848.66       | 1843.28 | 1857.73 |        |        |        |
| 캐     | 나 | 다 | 달     | 러             | (CAD)         | 1003.26       | 1004.60       | 1004.48 | 1010.38 |        |        |        |
| 홍     | 콩 | 달 | 러     | (HKD)         | 174.36        | 175.30        | 175.76        | 177.25  |         |        |        |        |
| 중     | 국 | 원 | (CNH) | 191.35        | 192.26        | 192.64        | 193.74        |         |         |        |        |        |
| 유     | 로 | 화 | (EUR) | 1608.91       | 1617.69       | 1599.58       | 1607.07       |         |         |        |        |        |
| 호     | 주 | 달 | 러     | (AUD)         | 902.73        | 904.44        | 900.19        | 906.01  |         |        |        |        |
| 싱     | 가 | 폴 | 달     | 러             | (SGD)         | 1071.22       | 1074.33       | 1072.53 | 1080.24 |        |        |        |
| 말     | 레 | 이 | 시     | 아             | 링             | 기             | 트             | (MYR)   | 324.68  | 325.95 | 326.07 | 328.59 |

#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있음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1년의 사업연도동안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이다.

따라서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다음에 열거된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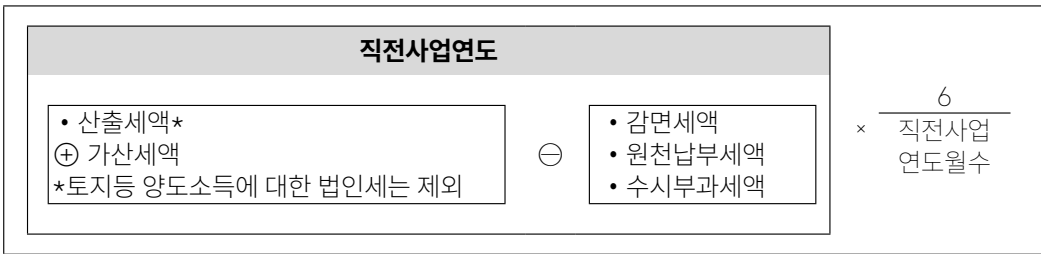
-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②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⑥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⑦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⑧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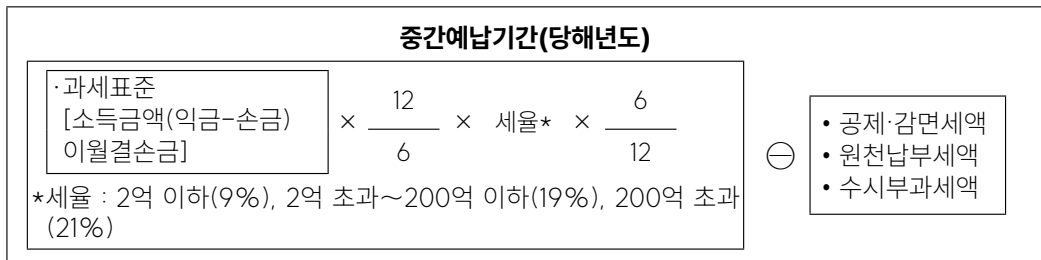
#### ① 직전연도 납부세액기준(흑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다시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전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적자법인)

전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가결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시 신고납부한다.



#### ③ 예외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5.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다.

### 중간예납 미납에 따른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소납부세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이때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당 0.022%를 곱하여 계산한다(가산세 계산산식 = 미납부세액 × 1일당 0.022% = 연 환산하면 8.03%)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         |   |                  |       |
|---------|---|------------------|-------|
| 이소영 의원안 |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
|         |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2.0% |
|         |   | 3억원 초과           | 27.5% |
| 정부 절충안  | - 배당을 얼마나 늘렸는지(배당증가율) 등 추가 기준 마련<br>- 고소득자는 세율 인하폭 축소 |                  |       |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



### 4대 은행 고금리 적금

| 은행     | 상품        | 기본금리 | 연 최대금리<br>(우대금리 포함) | 납입금액 | 대상            |
|--------|-----------|------|---------------------|------|---------------|
| 우리은행   | 우리 내리사항   | 2.0% | 8.0%                | 30만원 | 29세 이하        |
|        | 우리 WON모바일 | 3.0% | 7.0%                | 20만원 | 우리은행 알뜰폰 가입자  |
| 신한은행   | 신한다동이     | 2.5% | 8.0%                | 30만원 | 자녀 2인 이상, 기혼자 |
|        | 모두의 적금    | 2.0% | 6.5%                | 30만원 | 신한은행 고객       |
| KB국민은행 | 사장님+적금    | 2.0% | 6.0%                | 50만원 | 소상공인          |
| 하나은행   | 하나더소호     | 2.0% | 8.0%                | 30만원 | 소상공인          |



## ■ 증부세 강화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대응행태

| 정책                    | 시장참여자 특성         | 대응행태   | 이유                                      | 대응행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
| 다주택자<br>증부세 강화        | 투자수요자<br>(다주택자)  | 증여<br>(자녀 및 부부간 증여)                            | 증부세 부담 완화                               | 매도물량의 증여로 매물 감소  |
| 고가주택<br>증부세 강화        | 투자수요자<br>(다주택자)  | 저가주택 투자 확대                                     | 증부세 부담 회피를 통한 보다 높은 투자수익 확보             | 저가주택시장 매수 증가     |
| 임대사업자<br>증부세 감면       | 개인 투자자<br>(다주택자) | 개인 투자자의 임대사업자 등록<br>(임대사업자 등록 후 투자적 주택매수활동 강화) | 다주택을 매수하면서 증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통로로 인식 | 투자적 매수수요 증가      |
| 양도세 강화<br>+<br>증부세 강화 | 투자수요자<br>(다주택자)  | 매물 회수 및 매도 회피 강화                               | 증부세 부담보다 더 큰 양도세 부담 회피와 향후 양도세 완화 기대    | 기대보다 낮은 매도물량 증가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 구분      | 내용   |
|---------|--|
|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거주자<br>* 직전 3개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br>*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씩 최대 1억원<br>* 연간 납입 한도 이월 가능   |
| 의무가입 기간 | 3년   |
| 세제 혜택   | 계좌 내 이자, 배당, 주식 양도차손 등 손익 통산<br>*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br>*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 분리과세(세율 9.9%) |



##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5가지 현실적인 방법

### 1. ‘왜 이러지?’보다 ‘지금 어떤 상태지?’라고 물어보세요

슬럼프의 늪에 빠지면 원인을 찾으려 애쓰다 오히려 자기비판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유를 분석하기보다, 지금 나의 컨디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 2. 완벽주의에서 잠시 내려오세요

슬럼프는 종종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시작됩니다. 잠깐이라도 ‘완벽’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을 기준 삼아보세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포기와는 다릅니다—그건 회복을 위한 숨고르기예요.

### 3. 일상의 루틴을 소소하게 조정해보세요

같은 루틴에 갇히면 감정도 무뎠습니다. 출근길을 바꾼다든가, 업무 순서를 뒤집어본다든가, 아주 작은 변화가 새로운 자극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은 슬럼프 탈출의 촉매가 됩니다.

### 4.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하세요

누구나 슬럼프를 겪습니다.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 들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경험담이나 인터뷰를 통해 위로받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기도 해요.

### 5. 작은 성취를 기록하며 ‘다시 오른다’는 감각을 주세요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실감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해냈다면 기록해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다시 나를 끌어올릴 계단이 되어줄 겁니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수산물을 소비 가능한 상태로 조리하여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변형없는 미가공식료품만 면세됨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353, 2024.06.20

### 질 의

- 고객이 주문한 갑각류와 패류를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와 패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산물의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전법규법인-459, 2024.09.30

### 질 의

-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이하 '승계대상 부채')만을 승계시키는 분할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 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 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 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735, 2024.11.14

#### 질 의

- 2020년 00월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 2024.00.00.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수표로 수취함에 따라 양도대금 수취일의 기준환율과 수표 추심에 따른 현금 수령일의 기준환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어느 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수표수취일 환율적용시 281,567,500원, 현금수령일 환율적용시 273,060,000원으로 8,507,500원 차이 발생)

#### 회 신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으로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계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938, 2024.06.25

#### 질 의

- 계장 제조업자가 계장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 신

계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 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자감세 지우는 정부... 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화된 증권 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애초 정책대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세율이다.

### 국세청, '허위공시로 400% 급등' 추가조작단 정면 겨냥...27개 기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를 먹잇감으로 삼은 ▲추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떡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 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조사 발표로 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및 취임사에서 추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공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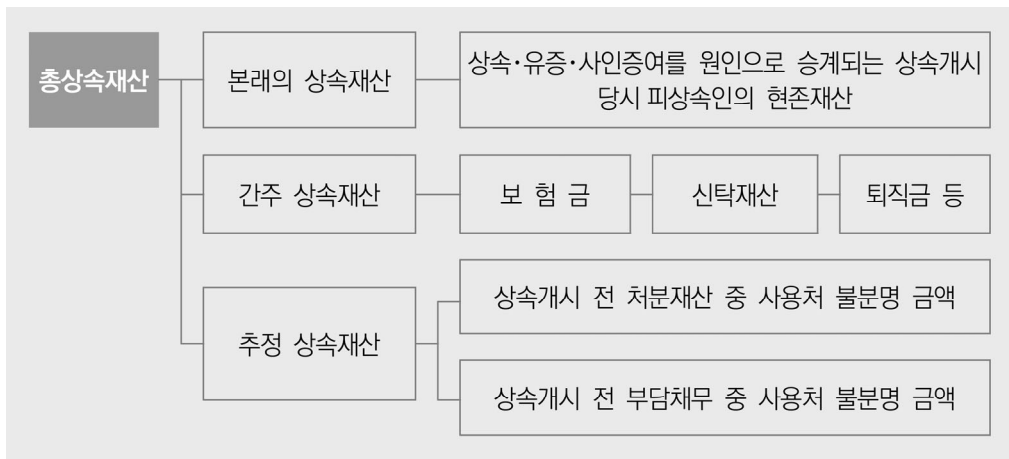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추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국세청, 2025. 7

## 제1장.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

### 제1절. 총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한다.

###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상증법 §2)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 상속재산 포함 관련 사례

- 1) 양도·양수계약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범위  
 (부동산 양도) 부동산 매도인이 매도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며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평가함(대법원2001두5040, 2002.2.26.)  
 (부동산 양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채권)에 포함함(재삼46014-2646, 1996.11.28.)
- 2) 영업권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상속증여세과-746, 2021.11.30.)
- 3) 인정상여,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함(상증통칙 2-0...1)

### 상속재산 제외 관련 사례

- 1) 질권·저당권 등 종된 권리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상증통칙 2-0...1)
- 2)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결의 전에 사망 시 배당금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서면4팀-701, 2004.5.19.)
- 3) 명의수탁한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수탁한 재산임이 명백할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재산세과-1052, 2009.5.29.)
- 4)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배상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3.13.)

## 제3절. 간주 상속재산(상증법 §8 등)

간주 상속재산에는 보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보험금”,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신탁재산” 및 “퇴직금 등”이 있다.

간주 상속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 사실의 결과로서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 1 보험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는 것 외에 상속인은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보험금지급청구권)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 이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상증법 §8).

### 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요건 (①+②+③전부 충족)

####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보험금에는 소득령 §25②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상증통칙 8-0...1).

####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

#### ③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text{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text{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관련 사례**

-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재산세과-418, 2012.11.22.)
- 2)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을 협의분할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2014-법령해석과-1672, 2015.7.13.)
- 3)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재산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증법 §8②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4.25.)
- 4)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익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조심2020전7882, 2020.12.11.)

**2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와 재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지정된 수익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이나 그

이익을 관리·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피상속인이 신탁하는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9).

**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신탁재산가액. 다만, 타인이 신탁이익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외
- 2)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경우 :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 3)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소유시기의 판정기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소유 여부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다음의 경우는 그 소유시기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 구 분   | 소유시기                 |
|---|----------------------|
|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시   | 위탁자의 사망일             |
| ② 신탁계약상 지급 약정일까지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원본(수익)의 지급 약정일       |
| ③ 원본(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   | 해당 원본(수익)의 최초 분할 지급일 |
| ④ 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고, 분할하여 지급                                      | 해당 원본(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
| 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종료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위탁자가 보유) | 해당 원본(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

**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실제적인 거래관계(증여계약 등) 없이 매매 등의 형식을 빌려 목적 재산의 명의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은닉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3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10).

#### 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 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②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③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 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⑥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 관련 사례

- 1)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유족위로금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재산세과-367,2011.8.1.)

2) 퇴직금 포기

(피상속인 생전에 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포기하였다면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조심2013서2501, 2013.9.16.)

(상속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제도46014-12214, 2001.7.18.)

**제4절. 추정 상속재산(상증법 §15)**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신고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예금인출 포함)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인출)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용처 소명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15).

이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4.29.)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국심2003중 302, 2003.5.21.).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가. 처분재산 또는 인출금액의 사용처 규명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그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한다.

-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 기간 계산**

민법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한다(재삼46014-1691, 1996.7.13.).

**다.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 내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계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규명 대상인 바, 해당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재산

**예시**

- 2022.1.1. 사망하였고, 2020.3.5. A토지 4.5억, 2021.2.1. B건물 1억, 2021.6.1. C분양권 2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은?  
 답) A, B, C 전체 소명대상 (부동산 2년 내 5.7억원 (4.5억원 + 1억원 + 0.2억원))
- 2022.1.1. 사망하였고, 2020.3.5. D토지 2억, 2021.2.1. E건물 1.5억, 2021.6.1. F분양권 1억원에 매도한 경우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은?  
 답) E, F 소명대상 (부동산 등 1년 내 2.5억원(1.5억 + 1억), 2년내 처분 가액 4.5억원이므로 1년이 지난 D토지 2억원은 소명대상 아님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은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 재산종류별 추정상속재산 대상여부?  
 답) 예금인출액 1억원(x) :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님  
 부동산처분금액 3억원(o) : 2억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 1년 전에 토지를 50억원에 처분, 50억원 중 10억원은 통장에 입금하고 20억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며, 입금된 10억원은 3개월 후 전액 인출되었으나 그 중 1억원만 사용처가 확인됨 (다른 입·출금 내역은 없음). 상속추정가액은?  
 답) ① 부동산(토지) 18억원, ② 예금 7억원  
 ① 토지 처분액 중 상속추정가액 : 18억원
  - 용도불분명 금액 : 50억 - 10억 - 20억 = 20억 ... ㉓ (처분대금 중 예금한 10억원은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봄)
  - 상속추정가액 : ㉓ - Min(50억원의 20%, 2억원) = 18억원
 ② 예금인출액 중 상속추정가액 : 7억원
  - 상속추정가액 : 10억 - 1억 - Min(인출금액의 20%, 2억원) = 7억원

**관련 사례**

-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범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가액”의 판단은 해당 2년 기간 동안에 실제 수입한 금액(상증령 §11④ 1호)을 말하므로, 매매계약은 상속개시 전 2년 전에 이루어져 계약금을 2년 전에 수령하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면 소명대상인 2년 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은 중도금, 잔금임(재산세과-209, 2009.9.14.)
- 2) 임대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또는 채무)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에 2억원(또는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명대상 여부를 판단함. 이 경우 차감한 임대보증금(또는 채무)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서면4팀-1790, 2004.11.4.)
- 3) 매매계약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의 사용처를 규명하여 용도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서면4팀-3080, 2006.9.7.)
- 4)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 5) 부동산 처분대금을 추후 인출한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 중 예금으로 입금한 후에 추후 인출한 금액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 2024.1.30.선고, 2023구합71315)

**라. 재산 처분가액과 예금 인출금액의 계산방법**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하고, 그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①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 재산의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②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전 등 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

이 경우 해당 금전 등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를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 있어서 실제 인출한 금전 등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전체를 기준)한다.



$$\text{실제 인출한 금전등 가액} = \left( \begin{array}{l} \text{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 \text{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 \text{합계액}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해당 기간 중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해당 통장} \\ \text{예입된 금전 -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 \text{등의 합계액 금전이 아닌 것} \end{array} \right)$$

##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 가.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무에는 미지급이자나 미지급 리스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4팀-1608, 2004.10.11.).

### 나.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른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련 사례                   |  |
|-------------------------|--|
| 1) 상속세 신고서에 현금으로 기재한 경우 |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현금을 기재했다 하여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재삼46014-2557, 1998.12.31.)  |
| 2) 타인에게 지급된 경우          | 해당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음(서면4팀-2458, 2007.8.17.)  |
| 3) 차명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용도가 불명하여 상속세 과세금액에 산입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빌린 타인 소유의 예금인 차명계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불산입됨(대법원 98두 18350, 1999.1.25.) |
| 4) 인출 후 재입금된 금액         |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975, 2007.3.23.)   |

#### 4 추정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추정의 배제

| 구 분   | 입증 금액                             | 추정상속금액                          |
|---|-----------------------------------|---------------------------------|
| ①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 금액 - Min(처분 등 재산 × 20%, 2억원) | 미입증금액 - Min(처분 등 재산 × 20%, 2억원) |
| ②-1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2(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
| ②-2 (국가·지자체·금융회사등 아닌 자로부터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입증여부 무관                           | 관련 채무액 전액(기한, 금액에 관계없음)         |

##### 가. 상속추정 요건과 추정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채무액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1) 재산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인출한 금전 등의 상속추정

- ① 상속추정요건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geq$  Min (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 금액  $\times$  20%, 2억원)
- ② 추정상속 재산가액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 금액  $\times$  20%, 2억원)

#### 2-1)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 ① 상속추정요건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geq$  Min (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  $\times$  20%, 2억원)
- ② 추정상속 재산가액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  $\times$  20%, 2억원)

#### 2-2)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외의 채무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 ① 상속추정 요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추정 상속재산가액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전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 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에 유의(2억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님)하여야 한다.

#### 추정 제도의 비교

| 구 분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추정                                      |
|-------|---------------------|-------------------------------|---|
| 입증 금액 | 양도금액 전체             | 취득금액 등 - Min(취득재산 등 20%, 2억원) | 처분금액 - Min (처분재산 20%, 2억원)                              |
| 추정 금액 | 미입증 금액(차감없음)        | 미입증 금액(차감없음)                  | 미입증 금액 - Min (처분재산 20%, 2억원)<br>* 변제 의무 없는 채무액 전체(차감없음) |

#### 나. 상속추정의 배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부담채무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처 미입증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또는 인출금액의 상속추정 배제**

① 추정배제 요건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금액 × 20%, 2억원)

**2)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의 상속추정 배제**

② 추정배제 요건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 × 20%, 2억원)

**관련 사례**

- 1) 상속세 신고서에 현금으로 기재한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현금을 기재했다 하여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재삼46014-2557, 1998.12.31.)
- 2) 타인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음(서면4팀-2458, 2007.8.17.)
- 3) 차명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용도가 불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명의로만 빌린 타인 소유의 예금인 차명계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불산입됨(대법원 98두 18350, 1999.1.25.)
- 4) 인출 후 재입금된 금액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975, 2007.3.23.)

**예시**

○ (상속개시일 2020.3.1)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단위 : 백만원)

| 재 산 종 류       | ①해명대상금액 | ②사용처입증 | 입증비율<br>(② / ①) | 용도불분명<br>(① - ②) |
|---------------|---------|--------|-----------------|------------------|
| 합 계           | 1,710   | 886    | 52%             | 824              |
| 부동산 처분대금      | 345     | 280    | 81%             | 65               |
| 금융기관<br>채무부담액 | 1,365   | 606    | 44%             | 7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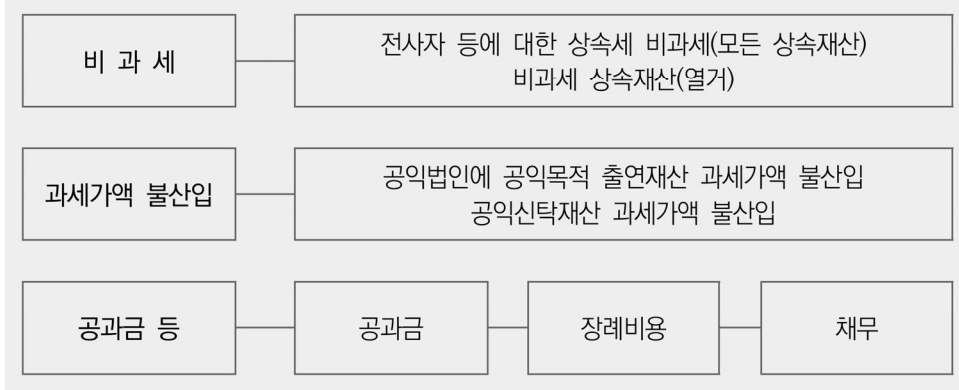
답) 559백만원

(∵) 부동산 처분대금은 80% 이상이 해명되고 미해명액도 2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추정에서 제외하며, 채무부담액은 해명비율이 80%에 미달하여 상속추정 적용

$$559\text{백만원} = 759\text{백만}(1,365\text{백만원} - 606\text{백만원}) - \text{Min}(1,365\text{백만} \times 20\%, 2\text{억원})$$

## 제2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비과세 등



상증법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에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상증법 §12)

상속세 비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 원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상증법 §11)과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상증법 §12)이 있다.

####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전쟁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전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서면4탐-2462, 2006.7.26. ; 조심2009서 3928, 2009.12.31.).

##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가.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28)을 한 재산의 비과세

- 1)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2) 피상속인이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 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3) 피상속인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4)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증법 및 다른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 받은 자(정당 또는 정치인 등)의 몰수·추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76, 2005.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 나.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의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

### 다.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 라. 금양임야 등의 비과세

「민법」§1008의3에 규정된 재산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 주재시 그 공동주재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1) 금양임야와 묘토(2억원 한도)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해당 금양임야 + 묘토 합계액 2억원 한도).

다만, 상속개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대법원97누15753, 1997.12.26.).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1008의3).

금양임야는 그 소유권이 제사주재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될 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1스145, 2012.9.13.).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상증령 §8③ 각 호에 따른 면적을 한도로 한다.

**금양임야·묘토 관련 사례**

1) 금양임야의 범위

(사망당시 분묘가 없는 경우) 금양임야란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해당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고,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해당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06스140, 2008.10.27.)

2) 분묘

분묘란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임(재삼01254- 2652, 1992.10.22.)

3) 상속개시전에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금양임야’라 해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심2000구514, 2000.9.22.)

4) 제사를 주재하는 자

(범위)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장녀 1인인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2016.12.30.)

5) 묘토의 범위

(의미) 묘토란 그 지상의 수확물로서 제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토지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는 토지이면 족하고, 그 취지상 반드시 제주가 직접 장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분묘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라면 묘토에 해당함(대법원39다24568, 1993.9.24.; 국심99경728, 1999.9.2. 같은 뜻)

##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

- 공익법인 등에 공익목적 출연재산
  - 공익법인 등이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공익사업은 상증령 §12에 열거된 사업임
- 공익신탁재산
 

문화, 예술, 환경, 교육, 장학 등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육성하여야 할 사업이나 예산 또는 행정력 등의 한계로 공익법인 등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면제받은 후에 그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등 편법적인 상속 행위를 규제하고자 여러 가지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상속·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가.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 나.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피상속인의 유언·사인증여 없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른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②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때 이사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해당하였으나, 이사에서 물



러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상증령 § 12)

공익법인 등이란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재삼46014-2483, 1995.11.1.).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등을 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통대 등을 말한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⑤ 법인법 §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⑥ 법인령 §39①1호 각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령 §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⑦ 법인령 §39①2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라.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1) 출연시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란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와 같이 권리의 이전과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공익법인 등의 명의로 이전된 때를 말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대상 물건을 인도받은 때를 말한다.

##### 2) 출연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 ②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마.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5%, 20%) 초과 출연시 과세가액 산입**

1) 과세가액 산입요건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해당 공익법인 등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을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5%,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초과출연시 과세가액 산입 예외사유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2011.1.1.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사후관리요건(상증법 §48⑩)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20)%를 초과하여 출연받고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0(20)%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2017.1.1. 이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초과출연여부 판단기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5%, 20%) 초과 여부는 아래 주식을 모두 합하여 판단한다.

- ①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③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④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바.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 2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30)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7).

해당 공익신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 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상증법 §14)

|     |   |   |
|-----|---|---|
| 거주자 | 공과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한도 없음)</li> </ul>   |
|     | 장례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례비용 총한도액 15백만원 (①+②)</li> <li>①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li> <li>② 봉안시설(자연장지 포함) 사용비용(공제한도액 5백만원)</li> </ul> |
|     | 채 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한도 없음)</li> <li>•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불가</li> </ul>     |
|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      |   |
|------|---|
| 비거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li> <li>•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li> <li>•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li> </ul> |
|------|---|

## 1 공과금

###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상증집행기준 14-9-1).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 ② 공공요금
- ③ 공과금 : 국징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외의 것
- 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비과세 받은 후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결정된 경우에 해당 경정·결정된 조세
- ⑤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을 공제한다.

|  |
|--|
| <p><b>관련 사례</b></p> <p>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br/>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재산세과-393,2011.8.23.)</p> <p>2) 증여세<br/>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 등에 해당함(서면4팀-1474, 2004.9.20.)</p> |
|--|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후 양도세 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피상속인이 비과세 결정받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재산세과-169, 2009.9.9.)

**4) 주식과세이연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채무 해당 여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2978, 2023.12.28.)

**5)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공과금에 해당함(재산세과-1661, 2009.8.10.)

**2 장례비용****가. 장례비용의 범위**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말한다.

**나. 공제금액(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한도)**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 증빙에 따른 장례비가 5백만원 미만시 : 무조건 5백만원을 공제
  - 증빙에 따른 장례비가 5백만원 이상 : Min (증빙에 따른 장례비용, 1천만원)
- ②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Min (증빙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비용, 5백만원)

**3 채 무**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부채)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이나 유증 등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받은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다.

“채무”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채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채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공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채무는 그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공 또는 변칙적인 수단에 의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도 납세자와의 분쟁발생 소지가 가장 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이다.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 방법 및 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가.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를 말한다(상증령 §10).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증여채무

증여채무를 이용하여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증여채무 중에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10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증여채무는 객관적 확인 여부에 불구하고 채무로 공제가 불가하며, 일정 기간 이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증여채무는 그 증여채무를 진 사실이 서면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다(서면4팀-3099, 2006.9.11.).

증여계약 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및 채무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증여계약(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하고 사망한 경우

상증법상 상속재산(상증법상 사인증여)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익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②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증여계약(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전)하고 사망한 경우

상증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서 차감한다. 이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아래 채무를 공제한다.

- ①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 ②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록한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 관련 사례

##### 1) 공제대상 채무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국심2007서3500, 2008.5.1.)

##### 2) 타인명의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음(재삼46014-2341, 1997.10.1.)

##### 3)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32)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함(상증통칙 14-0...3)

##### 4) 임대보증금

(공동소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하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임대차계약 체결시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됨(서면4팀-2640, 2007.9.10.)

##### 5) 한정승인

상속인 전원이 「민법」§1019①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15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제외)을 한도로 공제함(서면4팀-2105, 2005.11.8.)

##### 6) 가지급금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변제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함(법규과-2647, 2006.6.28.)

#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 국세청, 2025. 7

##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자 ⇒ 기업의 성장 ⇒ 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순매도 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 \* (한국 거래소) '21~'22년 개인 순매수 102조 원 → '23~'24년 개인 순매도 5조 원
  - 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였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되어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러한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조사대상은 ①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②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③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입니다.

## 2 세부 추진내용

### [유형 1]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투자자 유인한 시세조종자 : 9개

- 첫 번째 조사대상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들입니다.
  - 기업의 신뢰성 있는 공시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 그러나,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하여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습니다.
    - 소액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하였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 \* 대주주(소유주식 비율 1~2% ↑ or 시가총액 10억 ↑)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30% 세율로 과세  
→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 '무늬만 신사업' 기업 주요 탈세 사례 /

- ① [양도차익 무신고] 거짓 공시를 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부양 후 양도차익 무신고
  - 甲은 상장기업 A 전환사채를 가족법인에 미리 싸게 넘긴 뒤, A법인의 해외 자원개발을 허위 발표하여 주가를 3.5배 가까이 급등시키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하여 000억원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은 무신고
- ② [법인자금 횡령] '에너지 신사업 진출' 허위공시로 주가부양, 모집한 자금도 횡령
  - 乙은 배우자 명의로 상장기업 B를 인수하고 에너지사업 진출을 공표하여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투자금 △△억원을 횡령하여 고액 전세자금,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유형 2] '주식시장의 하이어나', 꺾데기만 남긴 '먹튀' 기업사냥꾼 : 8개

- 두 번째 조사대상은, 사채를 동원해 건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꺾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입니다.
  - 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 꺾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빛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였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 기업사냥꾼 주요 탈세 사례 /

- ① [법인자금 유출] 회사 인수 후 허위 용역비 등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횡령
  -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컨설팅 수수료 송금
  - 근무하지 않는 가족·친인척을 회사 대표나 직원으로 올린 후 고액 급여 지급
  - 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 처리
- ② [명의신탁] 회사 인수 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기업 인수
  - 고액 체납자인 기업사냥꾼이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상장 법인을 인수한 뒤, 인수법인이 00억원의 금액을 차입하게 하고 동 금액을 횡령


[유형 3] '상장기업 사유화',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 10개

- 세 번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입니다.
  -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또한,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참고로,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증여 재산 축소 규모 (10개 기업)

자녀가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증여재산 가액 대비 평균 91.5% 과소 신고(8.5%만 신고)

세법상 신고해야 할 증여 금액



91.5%

과소 신고  
신고금액

/ '상장기업 사유화' 주요 탈세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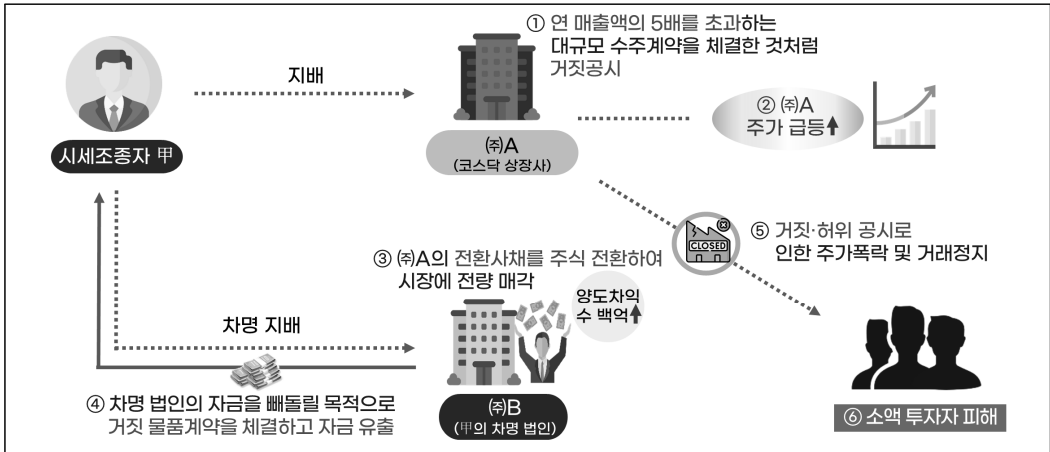
- ① [증여세 탈루] 주주배당 대신 자녀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지원
  - 상장회사 A의 사주 甲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A와 자녀회사 B 중간에 제3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였고, 자녀들은 분여받은 이익으로 배당 △ △역원을 지급받음
- ② [급여 과다지급] 사주에게는 정상급여보다 과다 지급하고, 주주에게 배당은 '0'원
  - 상장회사 A의 사주 甲은 영업이익의 약 21%에 달하는 00억원을 자신을 포함한 자녀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면서,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전혀 나눠주지 않음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 자금 원천,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정보전압류)를 실시하고,
  -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추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1)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함

|              |  |
|--------------|--|
| <b>사 례 ①</b> | <p>시세조종자는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 및 거래정지로 큰 피해 (기조사 사례)</p> <p><b>신사업</b> (시세차익은 차명법인에 거짓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꾸며 부당 유출)</p> |
|--------------|--|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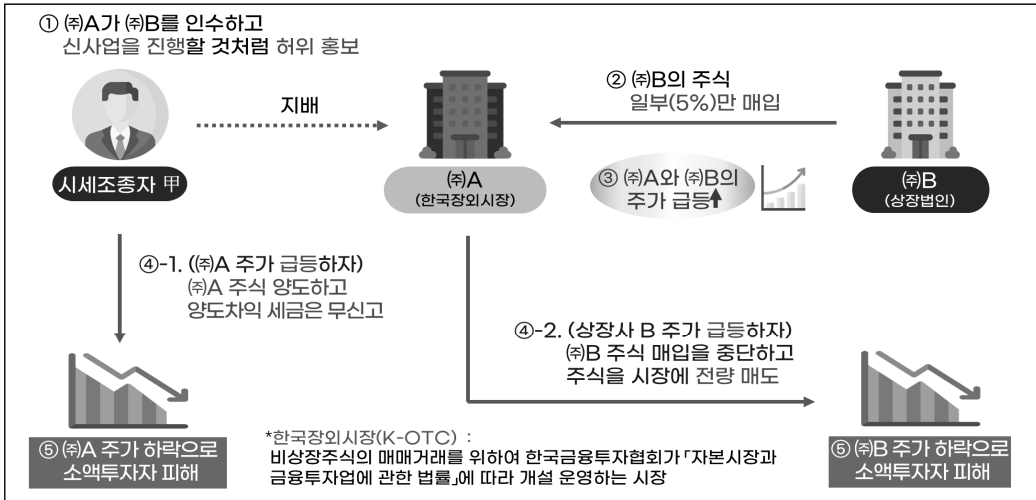
- (주)A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 시세조종자 甲은 “(주)A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거짓 공시를 하고,
  - (주)A의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주)B가 보유한 (주)A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여 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김
- 이후, 甲이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주)B에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000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주)B 자금을 부당 유출
  - 또한, 甲은 (주)A의 자금 △△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장기업 자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
- 한편, (주)A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1/5까지 폭락하였고 곧이어 거래 정지됨

□ 조사결과

- 사주 甲의 주식 명의신탁 등 증여세 000억원 및 법인자금 유출 귀속자 소득처분 000억원 등 00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하여 범칙조사 후 고발

|              |   |
|--------------|---|
| <b>사 례 ①</b> | 시세조종자는 상장사 인수 후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뒤 주식을 양도하<br>(무늬만 여 시세차익만 누리고, 소액주주는 주가폭락으로 피해 (이번 착수사례)<br>신사업) (주가 상승시기에 시세조종자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 시세차익 무신고) |
|--------------|---|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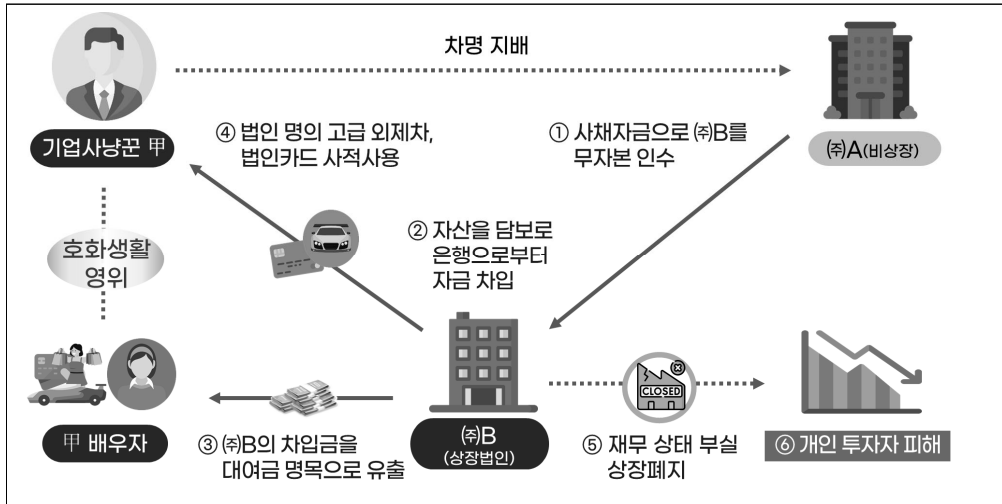
- (주)A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으로,
  - 시세조종자 甲은 (주)A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주)B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주)A, (주)B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으나,
  - 실제로는 (주)B의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음
- (주)A는 주가가 3배이상 급등한 (주)B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甲도 (주)A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00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무신고
- 한편,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B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되었고 소액주주 피해 발생

□ 조사방향

-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 추징

|              |   |
|--------------|---|
| <b>사 례 ②</b> | 기업사냥꾼이 차명법인을 이용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수법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먹튀 전문) 차입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빼돌려 호화생활 영위 (기조사 사례)<br>기업사냥꾼 (인수법인이 은행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대출금 형태로 부당 유출) |
|--------------|---|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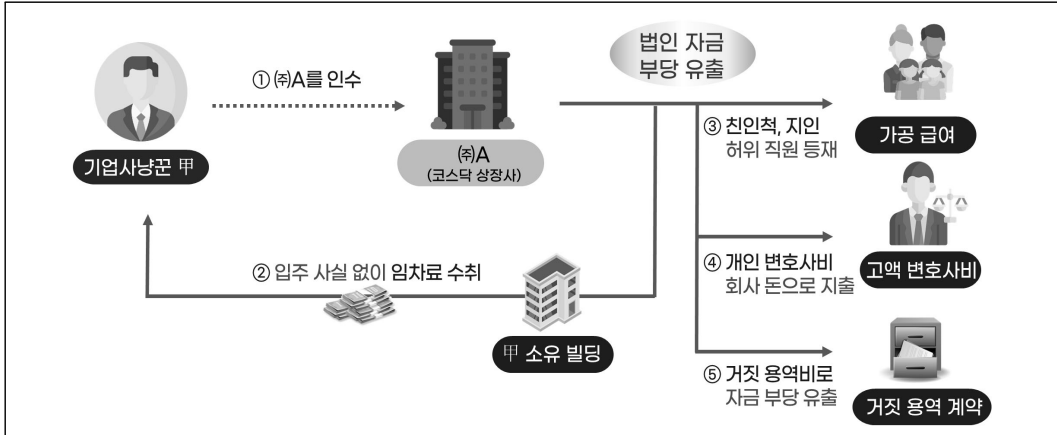
- (주)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기업사냥꾼 甲은 (주)A를 통해 상장사 (주)B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000억원에 인수한 후, 배우자를 (주)B의 대표자로 취임시킴
  - 다음으로, 甲은 (주)B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00억원을 차입하게 한 후, (주)B가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 영위
  - 또한, 甲은 (주)B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도, 이를 (주)B는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은 축소
- 이후, (주)B는 고액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주가는 1/10로 급락하고 거래정지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됨

□ 조사결과

- 가족 명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00억원 추징, 기업자산 사적사용 등 00억원을 적출하여 00억원 법인세 추징하고, 횡령 등에 대한 귀속자소득처분으로 000억원 소득세 과세

|  |
|--|
| <p><b>사 례 ②</b></p> <p><b>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가공 급여 및 임차료, 허위 용역비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등으로 인수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 영위 (이번 착수사례)</b></p> <p><b>기업사냥꾼</b> (기업사냥꾼이 친인척 가공급여 및 허위 용역비 등으로 인수법인 자금 유출)</p> |
|--|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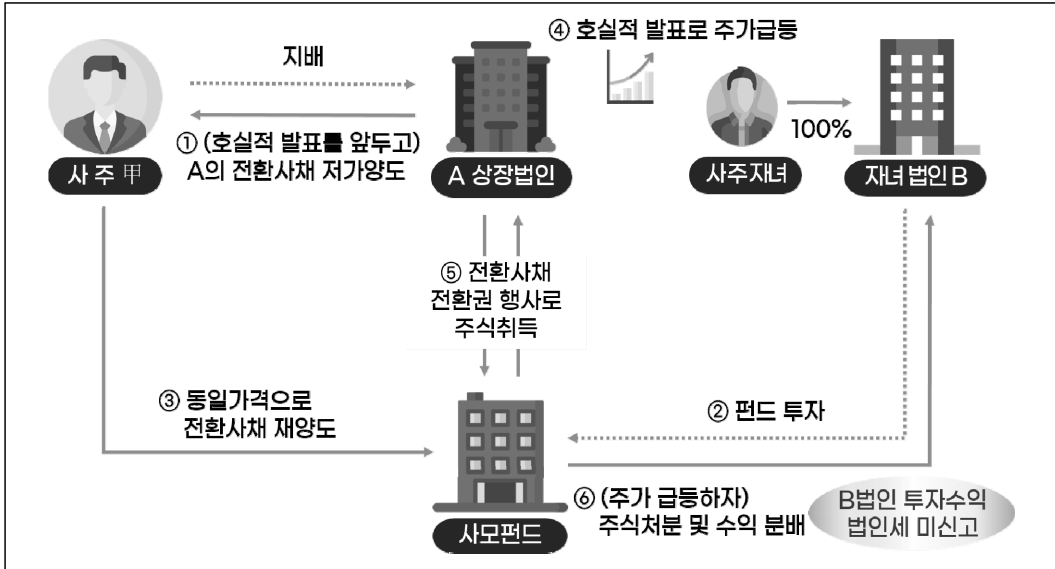
- (주)A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 법인으로,
  - 기업사냥꾼 甲은 상장사 (주)A를 사채 자금을 빌려 △△△억원에 인수한 후, 입주 사실이 없는 甲 소유의 빌딩에 (주)A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 △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익 편취
- 또한, 甲은 (주)A의 기업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
  - 이외에도, 법인 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수 억원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 비용도 회사돈으로 결제하면서 이를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하여 △△억원의 세금을 축소 신고
- (주)A는 甲의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주가가 甲이인수하기 전 대비 50% 가량 떨어지면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침

□ 조사방향

- 기업 자금 유출 목적 가공급여·거짓 용역비·허위 임차료 등 기업사냥꾼 탈세에 대해 엄정 조사 및 불법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사 례 ③ (지배주주 사익편취)**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 (기조사 사례)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사모펀드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분배금을 무신고)

□ 주요 혐의내용



- (주)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 사주 甲은 (주)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주)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 甲은 (주)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
  - 이후, (주)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00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00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 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
- 결국, 사주 甲은 (주)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주)A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침

□ 조사결과

-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000억원 추징